



수신자 내부결재

(경유)

제 목 관용차량 불용 결정

1. 청소과-105061(15.11.23.)호 관련입니다.

2. 청소과에서 불용요청한 청소차량(쓰레기수거용트럭 81마1211외 1대)에 대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2조 및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불용결정하고자 합니다.

불용 물품 내역

(단위 : 천원)

분류번호	품명	규격	장부 가액	구입 일자	내용 연수	불용기준
25101990	쓰레기 수거용트럭	현대자동차,마이티큐티,진 개덤프단축 DLX	21,850	2004년	7년	○ 내용연수 경과 및 장기간 사용에 따른 업무기능 저하 및 노 후화
25101990	쓰레기 수거용트럭	대양특장, PPSG050T, 5톤	75,800	2003년	7년	
계	2대	세부규격 첨부	97,650			

붙임 : 불용결정통보서 1부 끝.

주무관 **박순재** 계약팀장 **박만우** 재무과장 **김종구** 기획경제국장 **11/23**
길수철

협조자

시행 재무과-103326 () 접수 ()

우 0502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/ <http://www.gwangjin.go.kr/>

전화 02-450-7354 /전송 02-3425-1725 / qkrgha123@gwangjin.go.kr / 대시민공개

“동화나라 광진에서 상상충전!!”